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총 계 | 3,613,313,000 | 108,397,000 |
| 일 반 회 계 | 3,187,984,000 | 95,639,000 |
| 특 별 회 계 | 425,329,000 | 12,758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 | 214,883,000 | 6,446,000 |
| 기 타 특 별 회 계 | 210,446,000 | 6,312,000 |
| 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 | 8,860,000 | 265,000 |
| 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| 195,000,000 | 5,850,000 |
| 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 | 6,586,000 | 197,0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396,42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